

직급별 임용자격기준

직급	임용자격기준
1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진흥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.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및 4급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3. 변호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. 법무사 자격 취득 후 민사·가사 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.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진흥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.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및 5급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3.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. 법무사 자격 취득 후 민사·가사 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.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3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진흥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9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.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및 6급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3.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. 법무사 자격 취득 후 민사·가사 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.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4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진흥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.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. 법무사 자격 취득 후 민사·가사 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.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5급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진흥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.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3. 법무사 자격 취득 후 민사·가사 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.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5급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진흥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. 진흥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